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20호

「대전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일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대전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시의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고령친화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참조 : 복지 환경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066, FAX 042-270-5039, E-mail : airplane1000@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2. 고령친화제품등에 관한 연구·기술 개발
3. 고령친화제품등의 전시·대여 및 체험·교육 등 홍보
4.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5.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청회 등 개최
6.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및 지원을 위하여 고령친화 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 2018. 12. 11.] [법률 제15872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제품등"이라 함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용품 또는 의료기기
 - 나. 노인이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
 - 다. 노인요양 서비스
 - 라. 노인을 위한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 마.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서비스
 - 바. 노인을 위한 여가·관광·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 사. 노인에게 적합한 농업용품 또는 영농지원서비스
 - 아. 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고령친화산업"이라 함은 고령친화제품등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3. "고령친화사업자"라 함은 고령친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고령친화제품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